

최종 변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3965

피고인 조영남의 변호인 법무법인 로플렉스
담당 변호사 구본진, 최종민, 손형주

목 차

- I. 이 사건의 의미
- II. 원심 판결의 요지
- III. 항소 이유의 요지
- IV. 조영남은 사기, 앤디 워홀은 예술?
- V. 원심 판결의 구체적인 문제점 – 사실 오인
- VI. 원심 판결의 구체적인 문제점 – 법리 오해
- VII. 만일 원심 판결이 확정된다면?
- VIII. 결 론

I . 이 사건의 의미

미술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

- 검찰 수사 초기부터 언론과 대중의 비상한 관심
- 대한민국 미술의 논리, 규칙을 제시
- 대한민국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미술 관련 주요 판결로 남을 것으로 예상됨
- 미술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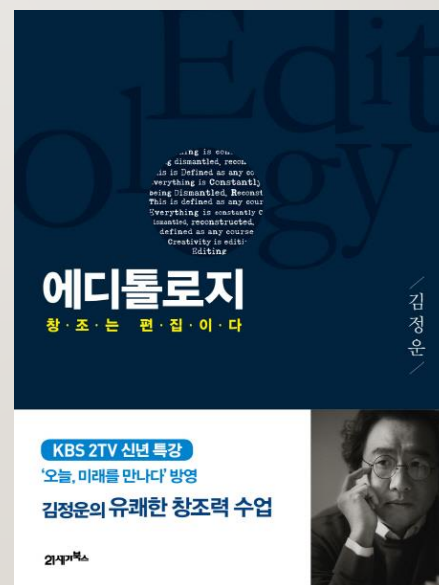
한국 사회의 미래가 달린 문제

- 김정운(문화심리학자)의 탄원서

“이번 ‘조영남 대작 사건’은 단순한 조영남 개인의 ‘윤리의식’,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사회의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 한국 사회의 ‘미의식’은 질적으로 다른 차원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사회, 역사적 맥락에서 조영남 대작 사건을 다뤄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II. 원심 판결의 요지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요지

- 피고인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직접 그림을 그린다고 말하는 등으로 작품 구매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직접 그린 그림이라고 믿게 하였다.
- ‘회화’의 특성상 누가 그렸는지 구매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은 콜라주 기법의 작품을 제작하였고 화투를 세밀하게 회화로 표현하는 등의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요지

- 갤러리 관계자들이나 작품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이 콜라주 작품 보다는 회화를 선호하고 작품의 예술성이 높아져 그림 가격이 올라가자 송기창 등에게 대신 작품을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 송기창 등에게 그림을 그려오게 한 다음 경미한 작업만 추가하여 서명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

원심이 유죄라고 판단한 이유 요지

- 회화에 있어 작가의 표현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조수를 사용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
- 송기창 등은 숙련도나 예술적 수준이 피고인 보다 월등히 뛰어나고 피고인의 창작활동을 수족처럼 돕는 데 그치는 ‘조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립적으로 작품의 창작적 표현형식에 기여한 ‘작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심이 유죄라고 판단한 이유 요지

- 이 사건 미술작품의 제작방식, 그와 같은 방식으로 제작된 작품을 온전히 자신의 창작적 표현물로 판매하는 거래형태가 우리 미술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관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은 송기창 등과 사제관계가 아니고 도제교육의 과정에서 제작된 것이 아니다.
 - 별도로 작업실을 마련하거나 보조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았다.
 - 이 사건 미술작품은 회화적 성격을 가진다.
 - 피고인은 지시 및 관여를 많이 하지 않았다.
 - 작품 제작 방식을 떼떈이 공개하지 않았다.
 - 대부분의 창작적 표현작업을 다른 작가에 의뢰하여 완성하였다.

원심이 유죄라고 판단한 이유 요지

- 작품 구입자들 중 대다수가 피고인이 직접 그린 작품으로 알고 구입했고 송기창 등의 조수를 사용한 사실을 알았다면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고지 의무가 있다.
 - 작가가 전적으로 관여한 ‘친작’과 아닌 작품 사이에는 구매자의 선호도, 가격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도1633 판결의 법리를 보면 송기창 등의 존재와 제작에 관여한 정도는 구매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가 된다.

Ⅲ.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판결의 사실오인

- 피고인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직접 그린다는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
→ 피고인은 조수 등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은 사실을 숨긴 적이 없고
오히려 언론 인터뷰, 퍼포먼스 등을 통해 알렸음
- 피고인은 추상적인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송기창 등이 나름의 구상과 해석
으로 형상화하여 표현했다고 판단
→ 송기창 등은 피고인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작품 이미지를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출력하여 똑같이 그려서 밑그림을 제작한데 불과

원심 판결의 사실오인

- 피고인은 화투를 세밀하게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
→ 피고인은 미술평론가와 대중으로부터 실력을 인정받아 왔고 2008년 이전에도 화투를 소재로 한 회화 작품을 여러 차례 발표
- 작품의 예술성이 높아져 그림 가격이 올라가자 송기창 등에게 대신 작품을 시키기로 마음먹었다고 판단
→ 회화 작품이 콜라주 작품보다 예술성이 높아진 것도 아니고, 작품 가격이 오르지도 않았으며, 우연한 기회에 송기창을 돕기 위해 조수로 활용

원심 판결의 사실오인

- 피고인은 경미한 덧칠 작업만 추가했다고 판단
→ 송기창 등이 그려온 그림에 선 추가, 색 변경, 배경 변경 등 많은 작업
- 구매자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
→ 통상 조수를 활용한 작품이 ‘친작’보다 가치나 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므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없음. 실제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음
※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문제삼은 것이 아니고 우연히 사건화된 것임

원심 판결의 법리오해

- 미술, 특히 현대미술을 잘못 이해, 사기죄에 있어 ‘기망’을 잘못 판단, 대법원 판례 및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반함
- 미술에는 국경이 없고, 특히 해외에서 시작된 팝아트에 대한 판단은 세계적인 관점을 무시할 수 없는데 ‘우리 미술계’, ‘우리 사회’라는 기준으로 판단
- 저작권법의 법리를 잘못 이해, 이 사건 작품의 ‘작가’를 피고인이 아닌 ‘송기창 등’이라고 판단(송기창도 스스로 이 사건 작품의 ‘작가’가 아니라고 주장)

원심 판결의 논리모순

- 범죄사실에는 방송 인터뷰 등에서 직접 그림을 그린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작위’에 의한 기망이라고 판단, 판단 부분에는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라고 설시
- 판단 기준을 이야기하면서 루벤스, 앤디 워홀 등의 해외 작가들을 예로 들다가 갑자기 ‘우리 미술계’, ‘우리 사회’를 기준으로 제시

원심 판결의 불명확성

- 피고인의 창작 방식이 허용되지 않는 범위에 있고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라고 판단
 - 창작방식이 허용되는 범위라면 고지의무가 없다는 것인지 불명확
 - 창작방식이 허용되는 범위가 아니라면 그 자체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것인지 불명확
- 고지의무가 있다면 앤디 워홀처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만 하면 되는지, 구매자에게 직접 고지해야 하는지 불명확

IV. 조영남은 사기, 앤디 워홀은 예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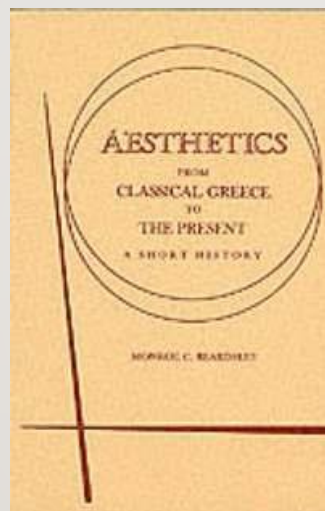
같은 ‘대작’인데 조영남은 사기 혐의, 앤디 워홀은 예술 왜? (중앙일보 2018. 6. 2.칼럼)

- 팝아트 : 일상생활에 범람하는 기성 이미지인 대중적 이미지에서 제재를 취했던 미술의 경향, 1960년대 미국에서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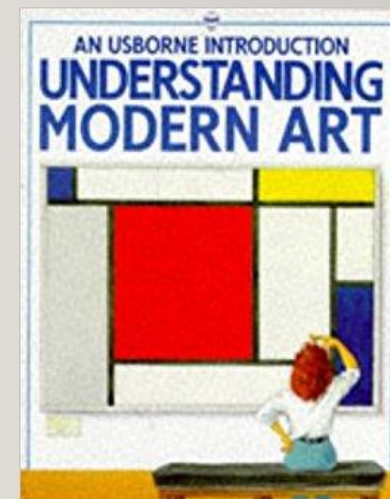
현대미술의 폭은 넓고 다양한 생각이 공존

- 현대 사회에 올수록 예전보다 폭이 넓어지고 의도적인 인간 활동이라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예술에 대해 확고하게 적용될 수 있는 유일한 정의를 찾아보기 어렵다.



Monroe Beardsley,
미학사

- 현대미술을 과거의 미술과 구별하는 특성 가운데 하나는 미술 자체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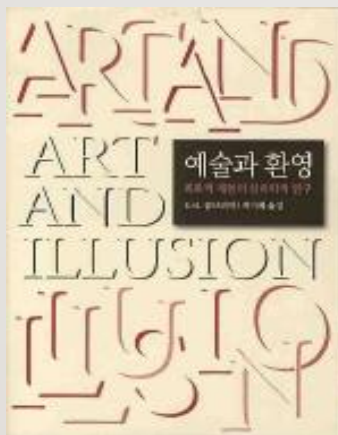


Monica Bohm-Duchen 외,
열려라 현대미술

일부 작가들이 조수 없이 회화 작업 전체를 직접 한다고 해서 그렇지 않은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지나친 편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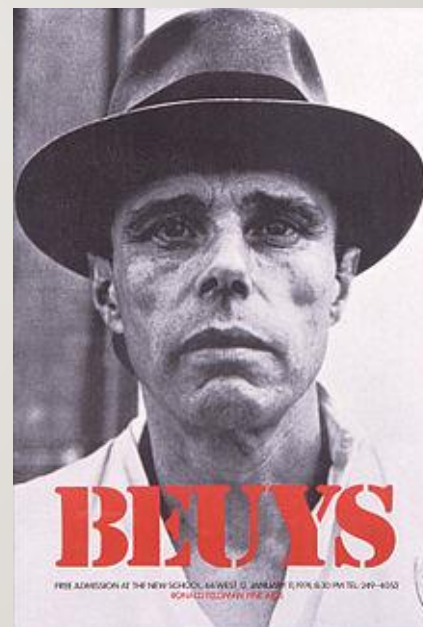
예술 향유의 주체가 ‘엘리트’에서 ‘대중’으로 이동

- 예술이 민중 혹은 보다 덜 낭만적으로 표현하여 인간 존재의 길을 찾지 못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고립되어 사멸하고 말 것이다.



곰브리치, 예술
과 환영

- 모든 사람은 예술가이다(요셉 보이스)



미술 창작은 미대 졸업생이나 유명작가의 전유물이 아니며 다른 사람들도 동일한 잣대로 판단해야 함



일반인들도 적극적으로 미술 창작에 나서고 있음

HLAB 취미미술
2018 여름특강 '세가지 이벤트'
2018.07.02 - 08.26 (8주과정)

1. 왕초보드로잉 기초특강
주 2회 2개월 400,000원 >> 380,000원

2. 왕초보일러스트 기초특강
주 2회 3개월 560,000원 >> 540,000원
주 3회 2개월 560,000원 >> 540,000원

1. '플러스원' 유화특강
주 2회 3개월 560,000원 >> 540,000원
주 3회 2개월 560,000원 >> 540,000원
(캔버스는 별도로 구입하셔야 합니다)

등록기간: 2018.06.23 - 07.02 까지 등록하시는 분들에게는
6만원 상당의 재료비를 할인 해 드립니다.

강남 / 잠실 / 홍대 / 학동 / 강북 / 부산(서면)
누구나 쉽고 즐겁게 미술을 배울 수 있는 곳 아트아틀리에

ART ATELIER
EMOTIONAL ART PLATFORM
S I N C E 2 0 1 3

EMOTIONAL ART PLATFORM **일상이 예술이 되는 시간**

Art Atelier dream of 2.30 for Culture and Art Platform in a word, the "adult emotion-filled space a new concept of art as a healing". Creative life and creative life will soon samim daily routine. So everyone's goal is to create beautiful art atelier's everyday self. Feel free to enjoy room to draw a trivial story!

Ⅴ. 원심 판결의 구체적인 문제점 - 사실오인

피고인은 조수 사용 사실을 언론 등을 통해 공개

- 2009. 9. 24. KBS ‘여유만만’



- 2015. 7. ‘새벽집’ 포이점 오프닝 퍼포먼스



피고인이 송기창, 오슬기의 작업 장소를 통제하지 않은 것은 조수 활용 사실을 숨기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임

송기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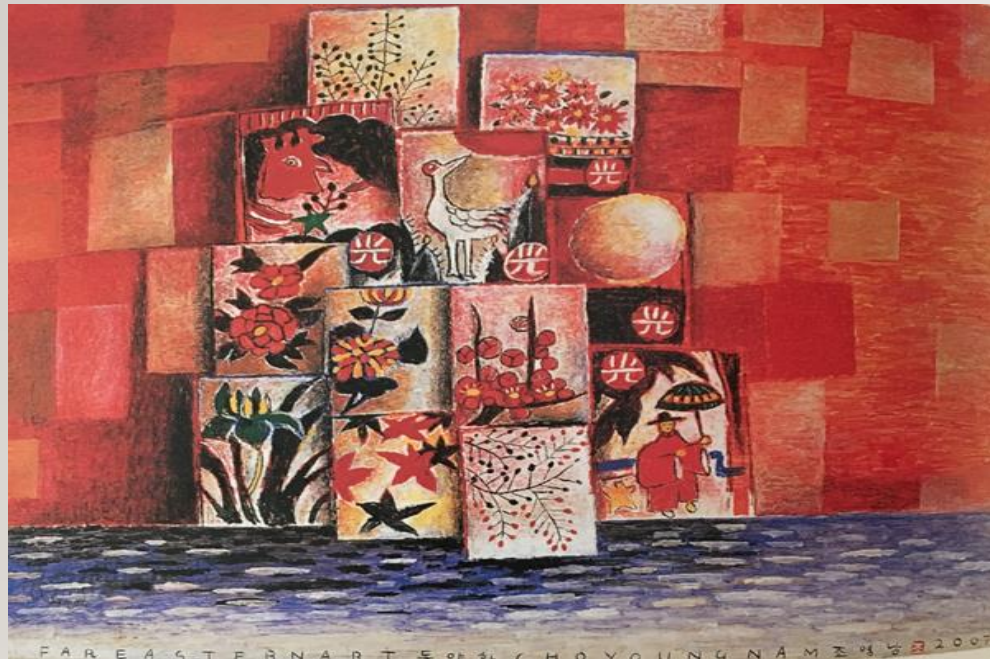
- 본인의 주거지 등에서 작업
-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송기창의 작업을 목격함

오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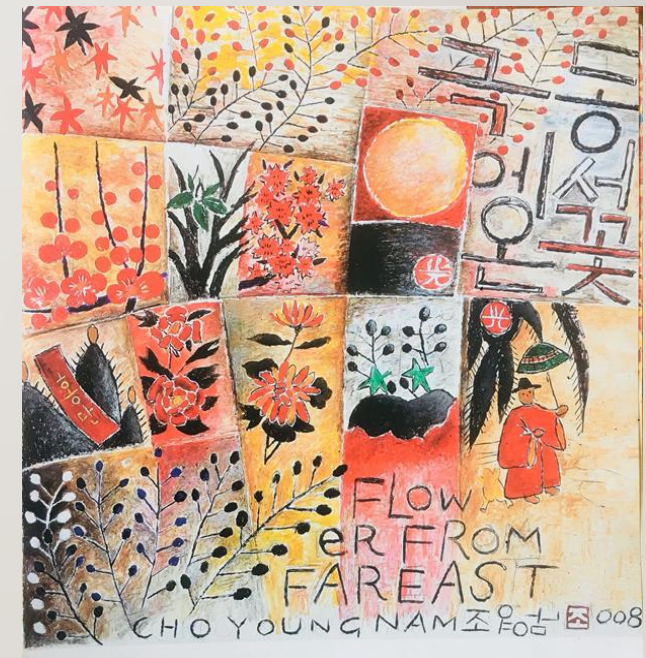
- 학교 실기실에서 작업
- 학교 실기실은 미술 관련 종사자가 많은 곳임

화투를 그릴 능력이 없어서 조수를 활용한 게 아님

2007년 제작, 2008년 전시



2008년 제작, 2008년 전시



피고인의 회화 실력은 1960~1970년대에 이미 수준급

시골풍경(1969년 작)



자화상(1971년 작)



오광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 : "69년에 제작된 작품과 72년, 73년에 제작된 몇 작품들을 보고 있으면, 조영남은 가수가 되지 않았더라면 화가 조영남으로 남았을 것이 틀림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조수들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밑그림만 그려왔을
뿐 독창적으로 지어내는 ‘창작’을 하지 않았음

송기창의 밑그림



오늘기의 밑그림



‘창작’의 사전적 의미 : 예술 작품을 독창적으로 지어냄

피고인은 조수가 그려온 그림에 선 추가, 색 변경,
배경 변경 등 많은 작업을 한 후 서명해서 완성

송기창이 그려온 그림(예) 피고인이 완성한 작품1 피고인이 완성한 작품2



조수를 활용했어도 작품의 가치는 달라지지 않음

- 월스트리트 저널 2011. 6. 3. 자 기사 – “그들 작품의 시장성에 조금도 영향을 주지 않아요.”라고 말한다.
- 스탠 세서 – “고객이 물을 경우 작가들이 조수를 썼는지 여부를 화랑에서 즉시 고지하고 있으나 그것이 작품의 시장성에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 진중권 증언 – “외국에서 난 기사를 보니까 알렸을 때 하고 안 알렸을 때 판매에는 아무 차이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VI. 원심 판결의 구체적인 문제점 - 법리오해

원심은 대법원 판결에 반함



가로 121cm, 세로 15cm 의 이상범의 설경산수화 중 훼손된 26cm×15cm 를 떼어내고
다른 사람이 그려 넣었어도 구매자에게 그 사실을 알릴 의무가 없다(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도1633 판결) – 수리에 작가의 관여 없고 재산적 피해도 명백한 경우 34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판결에도 반함

- 창작된 인물과 배경그림에 지정된 색깔을 칠하는 작업은 그림의 완성을 위한 기계적인 작업에 불과함
- 완성된 이 사건 그림 중 창작성이 있는 작업은 등장인물과 배경의 데생 및 셀칼라 지정 작업에 있음
- A가 데생한 후 A가 지정한 색깔로 채색된 이 사건 그림은 전체로서 A의 창작성이 담긴 A의 미술저작물임

서울고등법원 1995. 5. 19. 선고 95나8746 판결

‘회화’에서 조수 활용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회화’만 따로 판단할 근거나 이유 없음

루벤스



라파엘로



레디메이드의 등장 : 고정관념을 부수려는 反예술



마르셀 뒤샹 <샘>



마르셀 뒤샹 <자전거 바퀴>

‘가공’을 작가의 ‘선택’으로 최소화, 아이디어만 남김



파블로 피카소 <황소 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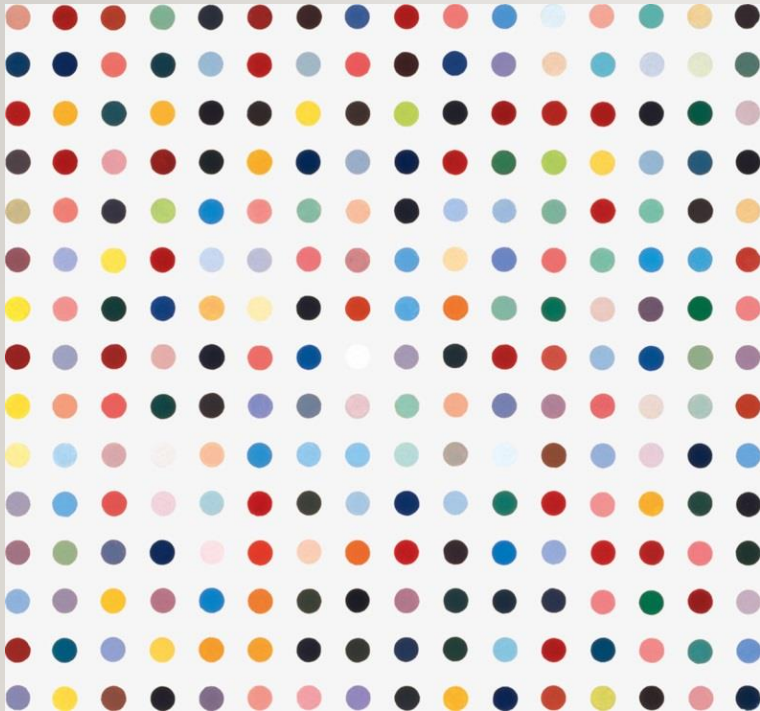
- 미술에서 지적인 바탕을 강조하고 그림으로써 미술창작 과정에 동반되는 신체적 활동과 손재주에 대한 관심을 지적인 것으로 돌리려는 의도

마르셀 뒤샹 이후 조수 활용 일반화

솔르윗 – 회화 1259점, 모두 조수가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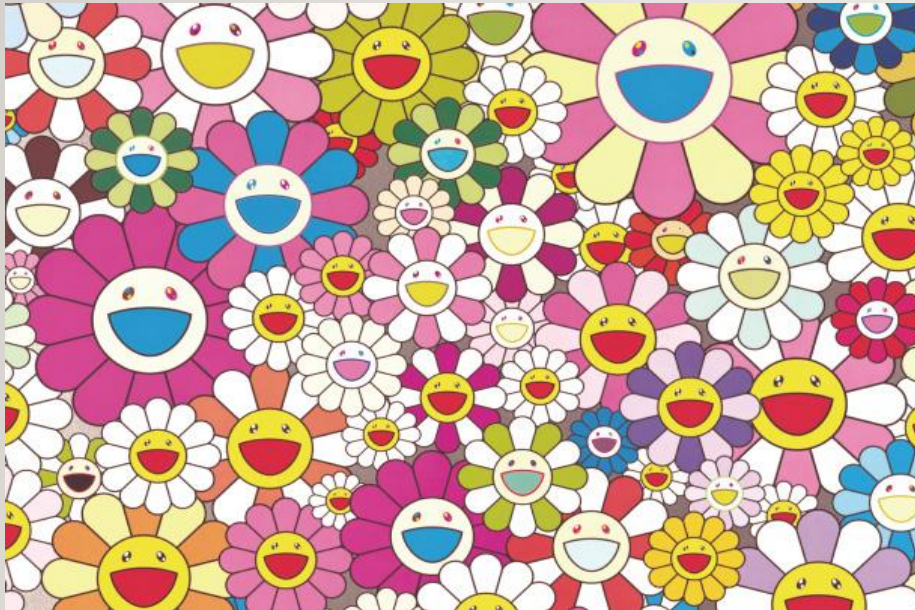
회화 작업에 조수 활용 사례 : 해외



- 비즈니스 인사이더 2013.6.12.자 기사
- 데미안 허스트의 ‘점’ 그림은 거의 1,400점이 존재하는데 그 중 데미안 허스트가 그린 것은 25점에 불과
- 데미안 허스트 : “모든 스폿 페인팅은 저의 시선, 손길, 마음이 담겨있습니다.”

회화 작업에 조수 활용 사례 : 해외

- 무라카미 다카시 : 조수 35명



- 리히텐슈타인



회화 작업에 조수 활용 사례 : 국내

- 권기수



- 2014. 1. 9. 자 서울신문 기사
- 원로 화가인 A씨는 밑그림 정도만 그릴 뿐 나머지 채색은 조수들이 거의 다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색 그림으로 잘 알려진 서양화가 B씨도 조수들이 작업한다. 친근하고 귀여운 캐릭터 작품으로 몸값 높은 인기작가 C씨는 얼마 전 작업실을 방문한 기자들에게 조수들의 작업 과정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다양한 조수 활용 방법이 존재함

다양한 경로로 조수 채용

- 권기수(홍익대 졸)

어시스턴트는 지방대학 등 다양한 대학의 후배들이 함께 함

- 진중권

작가-조수 관계의 유형은 다양하다. 알음 알음 소개받아 구두계약으로 시급을 주며 일을 시키는 경우....

영세한 규모부터 대규모 공장까지 다양

- 가디언 2015. 7. 17. 자

데미안 허스트의 최초의 조수 레이첼 하워드 : “저는 유일한 조수였고.... 처음에는 저 뿐이었죠. 공장은 아니었어요”

- 영세한 규모의 스튜디오가 압도적 다수, 반드시 여러 명의 조수를 두거나 ‘공장’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아님

다양한 조수 활용 방법이 존재함

회화 등 여러 장르에서 조수 활용

- 솔 르윗
- 데미안 허스트
- 무라카미 다카시
- 로이 리히텐슈타인
- 권기수

* 인기 작가들 중 상당수가 조수 활용

심지어 조수에게 작품 전 과정을 시키는 경우도 있음

- 존 브라운, ‘감식안과 인식론적 기초’

현대미술 작가라면 작품 제작의 전 과정을 자신이 수행할 수도 있고 일부만 수행하고 나머지를 조수에게 맡길 수도 있으며 아예 전 과정을 조수에게 시킬 수도 있음

다양한 조수 활용방법이 존재함

구체적이고 상세한 지휘감독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음

- 뉴욕타임즈 2001.7.25.자 기사

무라카미 다카시 조수 작업장에 “실제로 현장 하나가 그림이라면 방관자는 필수적인 요소인 지휘자가 빠져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 월스트리트 저널 2011.6.3.자 기사

뉴욕에서 활동하는 알렉산더 고리츠키의 조수들은 인도 자이푸르에 산다.

피고인은 실제로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하였음

- 샘플을 주고 똑같이 그려오도록 한 것 이상의 구체적인 지시, 감독은 없음
- “마음에 안 드시면 빠꾸한 적도 있었고 다시 그려온 것도 있고”, “피고인 조영남은 증인이 그린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다시 그려 달라고 하기도 하였”음(송기창 진술).

다양한 조수 활용방법이 존재함

테크닉이 좋은 조수를 활용하는
경우 많음

- 제프 쿤스

“나는 기본적으로 개념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리적으로 제작에 참여하지 않아요. 필수적인 기술이 없어서 최고의 사람들에게 가는 거죠”

(뉴욕타임즈 매거진 2012.8.17.자 기사)

테크닉이 좋은 조수를 활용한 것이
문제될 이유는 없음

- 데미안 허스트

“나의 조수들은 나보다 훨씬 뛰어난 페인팅 솜씨를 지니고 있다”

(가디언 2015.7.17.자 기사)

조수활용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이 상식이고 현실임

- 김명규 홍익대 교수

조수 활용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 상식

- 윤형재 광주국제아트페어 총감독

대부분의 작가들이 이를 공지하지 않는
것은 단순 노동, 기능적인 필요성은 의미
가 없기 때문

- 리차드 바인 아트 인 아메리카 편집장

조수의 사용은 오늘날 매우 광범위하고
견고하게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딜러들
이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는 한, 관례적
으로 이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습니다

예술에는 국경도 없고 팝아트는 해외에서 시작된 것 이어서 국제적인 기준도 매우 중요함

팝아트

- 1960년대 뉴욕을 중심으로 일어난 미술의 한 경향을 가리킴
- 미국만이 아니라 유럽이나 한국의 젊은 작가들에게도 공감을 불러 일으켰음
(미술대사전)
- “오늘날 국제적인 예술 현장에서 예술가가 상상하고 감독하며 마침내 서명과 함께 승인하게 되는 작품을 제작하기 위하여 화가가 조수(보조원)를 고용하는 것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주 있고 매우 일반적입니다”
 - 리차드 바인

작품의 작가는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사람이지 실행행위를 한 사람이 아님(저작권법 제2조)

- 「태극기는 바람에 펄럭인다」 (조영남 저, 2003)

“어느 날 우연히 들여다본 화투장 몇 개에서 놀랍게도 **한국 고유의 투박한 색상과 무궁무진한 인생 궤도와 흡사한 무속적인 의미를 발견**하고 깊이 매료되었다. 화투장이야말로 피카소의 악기나 앤디 워홀의 초상화나 이 중섭의 은박지나 혹은 김창열의 물방울에 비견되는 오브제 차용의 결정판이라 생각한 나는 머나먼 타국 땅에서 연방 희희낙락이었다.”



이 사건 작품에는 ‘조수’가 아닌 ‘피고인’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되어 있음

- 오마이뉴스 2007.7.14.자 기사

“역사적으로 이거 일본투의 그림이에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일본을 극렬히 싫어하잖아. 그럼 이걸 쳐다보지 말아야 돼. 일본에선 화투 안 친 지 오래됐어. 우리는 온 국민이 이걸 즐기잖아. 삼박사일을 관 옆에다 놓고도 이걸 때리잖아. 이런 **이중성, 모순, 패러독스를 없애야 한다고**. 또 미국 카드 하는 건 근사하게 봐요. 화투 치면 천한 걸로 생각하고. 홍대생들이 카드 하면 경비 아저씨들이 그냥 지나가는데, 고스톱 치면 막 나가라고 하고. 이렇게 **우리 자체가 가진 터무니없는 모순성, 이래서 안 된다는 걸 나는 이걸 자꾸 그리면서 타개해 나가는 거지.**”

숙련도는 작가를 결정하는 요소가 아님

숙련도는 작가를 결정하는 요소가 아님

- 숙련도가 더 낫다고 조수가 그 작품의 작가라는 논리는 성립 불가
- 미술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논리임

원심의 논리라면 세계적인 거장들의 작품은 대부분 조수가 작가

- 데미안 허스트 : 스폿 페인팅 1,400 점 중 25점만 제작, 본인보다 훨씬 뛰어난 페인팅 능력 가진 조수 활용
- 제프 쿤스 : 물리적인 제작에 참여하지 않음, 최고의 테크닉 가진 조수 활용

본건은 저작권법위반죄와 직결되어 있는데 검찰이 사기죄만 기소한 것은 모순임

피고인이 작품 수정, 서명을 했고 완성 여부, 공표 여부 모두 결정

- 피고인이 수정하여 완성
- 피고인이 서명
- 피고인이 완성 여부 결정
- 피고인이 공표 여부 결정

원심 판결의 논리라면 피고인의 조수들의 저작권 침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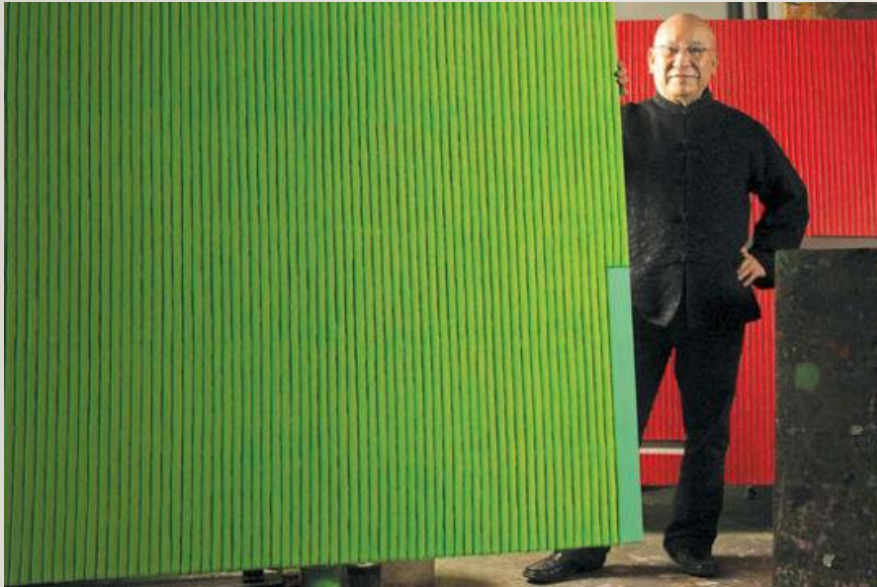
- 수정했으므로 동일성유지권 침해
- 서명했으므로 성명표시권 침해
- 완성 여부 결정하고 공표했으므로 공표권 침해

그런데 검찰은 저작권법위반으로 기소하지 않았음

VII. 만일 원심 판결이 확정된다면?

국내 유명 작가 중 상당수 사기죄 성립

단색화의 박서보, 물방울의 김창열도 조수 사용하고 있음, 하지만 조수 사용 사실 공개 또는 고지하지 않음 - 국민일보 2016.5.17.자 기사



회화 작업에 조수 사용하는 작가는 사실상 모두 불법

‘동구리’ 작업의 권기수 – 작가는 컴퓨터 작업까지만 해서 원심판결에 따르면 허용된 창작 범위 밖이므로 불법



해외 유명 작가들도 대한민국에서만 사기죄 성립

- 데미안 허스트



- 앤디 워홀(생존했다면 처벌)



대한민국 미술은 세계에서 고립, 퇴행할 것임

- 작가들은 모든 작품에 “이 작품은 작가가 70%만 그렸습니다”, “이 작품은 조수가 밑그림만 그렸습니다”라고 표시하고 팔아야 함. 그런데 그런 계량화 자체가 불가능
- 피고인 조영남은 미국, 중국 등 해외에서 작품을 판매해왔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국내에서만 문제
- 결국 대한민국 미술계는 세계 추세에서 동떨어지고 퇴행을 거듭할 것임

VIII. 결 론

피고인이 무죄인 이유

- 피고인의 작품을 송기창 등이 컴퓨터 등을 이용해서 똑같이 그려왔고 피고인은 추가, 삭제, 변경 등을 통해 작품 완성했으므로 현대미술에서는 물론이고 전통적인 미술에서도 당연히 허용되는 창작 방식
- 1960년대 이후 팝아트의 개념이 일반화되면서 조수 활용이 특별한 창작 방식이 아니며 작품의 가치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구매자에게 알릴 의무가 없음
- 팝아트를 추구하는 피고인은 조수 활용이 당연히 허용되고 알릴 필요가 없다고 믿었고,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조수 활용 사실을 알렸기 때문에 기망의 고의 없음
- 조수를 활용한 작품이라고 친작 보다 시장 가치가 더 낮거나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아니어서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재산상의 손해가 없음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다면

- 미술계는 세계적 조류와 함께 하게 되고 다양한 창작 방법이 허용되어 더욱 발전
- 대한민국 사회의 ‘미의식’은 질적으로 다른 차원으로 발전

문화심리학자 김정운 탄원서(원심 2016. 12. 16.자 변호인 제출 참고자료 2.)

- 미술이나 미의식의 발전은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

감사합니다
